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24일(토)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2018.11.24(토)10:20~11:50

〈세션4〉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세션

사회: 김교성 (중앙대)

발표1: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에 관한 연구 윤석영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발표2: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발표3: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이지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 성별비교를 중심으로1)

이지은(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I. 서 론

한국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약 20년 간 '이념체계'로 논의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하나의 도입해볼 만한 제도로써 논의되기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 배경에는 대외적으로 스위스와 핀란드에서의 크고 작은 실험들과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없는 성장 담론에서비롯한 위기의식이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대내적으로는 2016년 서울에서 개최한 기본소득세계대회를 통해 기본소득 의제가 널리 알려질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지방정부의 '청년배당'시행, 이후 2017년 대선경선과정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포함한 사회수당의 안들이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기본소득의 정치·사회적 가시성이 높아졌다(김교성·이지은, 2017).

이에 따라 최근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논쟁점은 주로 재원마련 방안과 급여수준에 대한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설정과 같은 '제도적 실현가능성'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연장선상에서 국내 기본소득 모델의 효과성 평가는 주로 '탈상품화'원리에 기반한 빈곤 및 불평등 완화와 같은 '소득재분배' 효과에 주목했다(김교성, 2009;백승호, 2010; 강남훈, 2013, 2017; 전강수·강남훈, 2017; 이현주·장지연·전병유, 2017; 변양규, 2017; 최태훈·염명배, 2017). 이러한 측면들은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현재 복지체제와 차별적인 기본소득 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윤홍식, 2017; 조남경, 2017).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새로운 분배체제의원리로서 '탈노동'에서 찾고 있으며,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적이 탈노동을 통한 진정한 자유의실현과 보장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Gorz, 1999; Weeks, 2011/2016; Lewis, 2013; 49-50; Standing, 2013; 조남경, 2017).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기본소득의 '목적'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현재 논의들이 기본소득의 지향성 중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탈노동'원리가 '탈상품화'원리와 궁극적으로 다른 점은 일(labor)과 노동(work)의 개념을 먼저 구분한다는 것이다. 탈노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임금노동과 소득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조직된 현대 노동사회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였다(윤홍식, 2017; 조남경, 2017). 무엇보다 재생산가치가 생산 가치에 종속되어 있으며 임금노동세계가 생활세계를 복속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나아가, 탈노동 원리를 무급가사노동에 적용한다면 현재의 노동시장과 가구 내에 존재하는 젠더분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Weeks, 2011/2016: 198). 이렇게 기본소득이 협소한 탈상품화 원리를 넘어 탈노동 원리의 분배체제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유급노동 중심주의에 기반한

¹⁾ 본고는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젠더불평등 구조에 대한 비판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이 젠더평등을 증진시킬지'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의 찬반논쟁은 오랜 시간을 두고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찬성 측 주장은 기본소득이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유급노동 중심주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여성의 가구 내 협상력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Fitzpatrick, 1999; Robeyns, 2001, Zelleke, 2011, Mckay, 2001, Pateman, 2004). 반면,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특히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의 경우 노동의 성별분업을 강화하며 여성의 노동공급을 하락시킴으로써 성별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obeyns, 2001; Gheaus, 2008). 이러한 찬반논쟁은 기본소득이 젠더평등을 증진시킬지 그렇지 않을지의 '여부'에 대한 과중한 관심을 통해, 기본소득은 급여수준이 높지않다면 성별분업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담론을 형성하는데 조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여성 내에서의 다양한 위치들을 간과한 논의이며,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여성이 처한 경험과 지위에 따라 효용이 달라질 것임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기본소득 지급여부 자체가 젠더평등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으로의 흐름은, 기본소득이 현재 젠더레짐의 변화를 촉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소홀하게 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보다 모두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제도로 설계될 수 있으려면, 선행연구의 몇 가지 한계들을 넘어서야 한다. 첫째, 빈곤완화나 소득재분배와 같이 '소득'만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탈상품화 정책의 아류'(윤홍식, 2017), 혹은 현재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위치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 모델의 효과측정 관련 선행연구들이 '소득'만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젠더불평등을 감추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탈노동 원리를 실현하고 자유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따라 분석방법도 보다 다차원적이어야 한다. 둘째, 기본소득에 대한 일부 페미니스트의 반대 입장은 현재의 젠더불평등을 불변의 상황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여성의 '노동공급'에 중점을 두거나, 기본소득을 주거나 주지 않는 것이 젠더(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선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젠더평등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남녀 간의 젠더불평등 뿐 만 아니라 여성의 교차적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어떻게 울스턴크래프트의 논쟁에 빠지지 않으면서 젠더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유'에 대한 새로운 측정으로 평가되는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에 주목하였다. 자유의 정도에 대한 측정은 소득 뿐 만 아니라 다차원적 측정을 필요로 한다. 일찍이 복지국가 연구에서 복지의 대리지표로 소득을 주로 활용했지만, 소득은 자원활용능력(command over resources)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구하며 유급노동 중심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를 자원활용능력의 증진으로 보았을 때, 자원의 범주에 소득과 시간을 포함한 개념이 재량시간이다. (Goodin, Rice, Parpo & Eriksson, 2008). '시간자율성'을 대표하는 재량시간은, 단순히 자신의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 선택하고 그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oodin, Parpo and Kangas, 2004; Goodin, Rice, Bittman and Saunders, 2005; Rice, Goodin and Parpo, 2006; Goodin et al., 2008).

이렇게 기본소득 연구에서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 차원을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수직적 재분배 뿐 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시간자율성의 변화를 포착할수 있으며, 둘째, 시간분석은 소득만 보았을 때 밝혀내기 어려웠던 가구 내 불평등과 무급노

동을 가시화 할 수 있어 계급불평등 뿐 만 아니라 젠더불평등을 가시화 할 수 있다(Daly, 1992; Millar, 2003; Kixilirmak and Memis, 2009; Antonopoulos and Hirway, 2010; Bardasi and Wodon, 2010, 노혜진, 2013). 셋째, 기본소득 지지자들 중 다수는 소득과 시간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해 왔다. 자율적 맑시스트들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며 이를위한 정책조건으로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패키지로 제안했다(Gorz, 1999; Weeks, 2011/2016). 국내 학계에서도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소득보장과 더 많은 자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정책과 복지정책의 결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주은선·김영미, 2012; 주은선, 2013). 특히 다수의 페미니스트들 역시젠더정의 실현 측면에서 소득재분배와 시간재분배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Della Costa and James, 1973; Cox and Federici, 1976; Mckay, 2001; Pateman, 2003).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목적과 원리를 고려한다면, 젠더불평등 구조를 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이 남녀간 시간재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재량시간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 지급 후 성별 재량시간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기본소득 지급은 여성들의 재량시간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재량시간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성별격차), 소득빈곤 계급과 소득비빈곤 계급의 차이(계급간 격차), 그리고 여성 내의 계급간 격차를 분석하며, 세부적으로 개인·가구·고용특성에 따라 관찰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 자체가 남녀 간 시간자율성 격차를 얼마나 줄일수 있으며, 어떠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효용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본소득과 탈노동

국내 사회정책 영역에서 기본소득은 주로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모델 설계의 바탕은 낙인효과 없는 빈곤완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제도와는 다른 기본소득의 새로운 탈상품화 효과에 기대한다(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강남훈, 2013, 2017; 전강수·강남훈, 2017; 이현주·장지연·전병유, 2017; 변양규, 2017; 최태훈·염명배, 2017). 그러나 일부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의 매력을 대안적 분배체제로서 '탈노동사회'로의 지향에서 찾고 있으며, 현재 기본소득 연구들은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Gorz, 1999; Weeks, 2011/2016; 조남경, 2017). 다시 말해 현재까지 기본소득 모델과 전략은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대체하지 않으면서 사회수당형 혹은 부분기본소득형을 제안하거나, 이것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실현가능하며 어느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되는지 검토하는 수준의 논의로서, 기존 복지국가의 핵심개념인 탈상품화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조남경, 2017). 나아가 단계론적 이행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신랄한 비판은(윤홍식, 2017; 김영순, 2017) 아직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국가 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여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탈노동 지향에 대한 전략적 고민의 부재에 기인한다. 따라서 기본소득 목적이 '실질적 자유의 증진'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향후 연구에서 '탈노동'원리는 전략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그렇다면 탈노동(Post-work)란 무엇인가? 대안적 체제원리로서 탈노동은 '일(labor), 즉 임

금노동과 소득(income)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윤홍식, 2017; 조남경, 2017). 여기서 먼저 일(labor)과 노동(work)은 먼저 구분되어야 하는데 일은 임금노동을 통한 소득활동을, 노동은 일반적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탈노동은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노동(work)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이 임금노동(labor)에 의존하는 정도를 급격히 줄이는 것이며(한동우, 2017; 21), 임금노동의 축소는 생활세계의확대, 곧 삶의 확대로 연결된다. 기본소득은 비단 임금노동으로부터의 해방(노동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노동 해방(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자유 실현)을 포함한다. 무급가사노동에탈노동 원리가 적용될 때, 현재 가족중심 조직화와 노동의 젠더분업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Weeks, 2011/2016; 198). 따라서 탈노동 원리는 노동시간의 감소 뿐 아니라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노동윤리에 대한 불복종(Berardi, 1980; 169)'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노동'원리에 대한 전략적 검토는 기본소득을 임금중심주의(노동윤리)와 가족중심주의(가족윤리)를 완화하는 기제로서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핵심원리인 탈노동과 복지국가 체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일 부 학자들은 복지국가의 핵심정책인 소득보장제도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을 지향하 는 반면, 새로운 복지체제는 탈노동화(delaborization)를 지향한다고 말한다(한동우, 2017; 윤 홍식, 2017).2) 그러나 탈노동과 탈상품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 탈 상품화 개념이 애초에 협소하게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탈상품화는 폴라니(Polanyi, 1944/2009)의 노동 상품성 개념을 기초하여 오페(Offe, 1972, 1984)에 의해 발전된 개념을 에스핑 앤더슨(1990)이 정립한 것으로서, 임금노동자들의 탈상품화라는 개념으로 협소하게 규 정되었다(Knijin and Ostner, 2002;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³⁾ 폴라니의 문제의 식은 노동의 상품성이 허구적이라는 것을 폭로하며 노동시장에 들어간 사람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자유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에 반해, 에스핑 앤더슨의 경우, 상 품화가 전제된 (주로 남성의) 탈상품화를 의미했다. 이러한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는 무급 노동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몰젠더적(gender-blinded)라는 비판을 받았다(Orloff, 1993; O'Connor, Orloff and Shaver, 1999; Sainsbury, 1999; Lister, 2000; 유홍식·송다영·김인 숙, 2010). 에스핑 앤더슨은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개념을 제시하였지만, 이 역시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았다(강희경, 2007).4) 가족을 복지제공 의 주체로 인정하여 국가-시장-가족의 분석틀로 보완·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 하였지만,

²⁾ 윤홍식(2017)은 "현실세계에서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탈노동화를 보장하는 분배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임금노동 없이는 개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탈상품화 정책의 아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기서의 탈상품화는 에스핑 앤더슨의 협소한 개념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탈노동과 탈상품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실상 폴라니의 탈상품화 개념에는 탈노동 원리가 속해 있는 것이다.

^{3) &}quot;탈상품화는 어떤 서비스가 권리의 대상으로서 주어질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성립하며"(54)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79)를 가리킨다. 탈상품화 지표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상병급여, 실업보험을 ①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의 엄격성(현금급여를 수급대기일수 및 급여의 최대 수급기간) ② 소득대체율 ③ 수혜대상의 범위 등으로 구성하였다 (Esping-Andersen, 1990: 54).

⁴⁾ 탈가족화는 "가구의 복지와 돌봄 책임이 국가의 서비스 제공 또는 시장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완화되는 정도"로 정의하며, 탈가족화 지표를 ① GDP 대비 건강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출비율, ②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정도, ③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의 정도, ④ 65세 이상 노인 중 가정돌봄서비스를 받는 비율로 구성하였다(Esping-Andersen, 1999: 51).

상품화를 전제로 한 돌봄 책임의 완화에 주목하기 때문에 가구 내의 개인의 권력관계를 보다심도 있게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탈상품화 개념에 '여성의 유급노동 접근권'과 '독자적으로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과(Orloff, 1993)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의존이나 국가의 공적의존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자율성' 개념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 탈가족화를 "개인의 결혼여부, 가족관계, 무급 돌봄노동 수행여부 등과 관계없이 유급노동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정도"(Lister, 2000)로 정의하는 바들은 탈가족화 개념을 가족에 대한 여성의경제적 자율성 증진으로 재개념화 할 것을 제안한다(강희경, 2007: 3; 윤홍식 외, 2010: 99).

이러한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개념 논쟁을 통해 노동과 복지를 둘러싼 개념과 범주를 수정·보완해 왔으며, 탈노동 원리는 이를 보다 전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대 노동사회에 근거한 복지국가 체제는 사회급여들이 임금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근로유인기제가 강하다는 점, 돌봄을 (재)상품화 하는 사회서비스 제도 역시 비공식 영역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노동사회의 특성을 강화한다(한동우, 2017: 17). 이러한 협소한 노동, 유급노동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기제인 동시에 단순히 가구의 경제적 지원이나 가구의 돌봄 책임을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가구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탈노동원리는가족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기제로서 복지체제의 '실질적 탈상품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있다.5)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적은 탈노동원리를 통한 '자유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 자유의 증진(Real Freedom for All)"을 목적으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 제도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실질적 자유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순전한 권리가 아니라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capacity)"을 의미하며, 권리보장, 자기소유권, 기회를 모두 구현하는 자유의 개념을 말한다(Van Parijs, 1997).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소득 자체가 정책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자유증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기본소득이 협소한 탈상품화원리를 넘어 실질적 탈상품화를 구현하는 탈노동 원리의 분배체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과연 기본소득제도가 얼마나 혹은 누구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6) 이러한 측면들은 기본소득 연구에서 '자유'에 대한 새로운 측정으로 평가되는 '재량시간' 개념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2. 재량시간

Goodin et al.(2008)은 소득과 시간을 통합한 개념(a scalar notion)을 고안하였는데, 시간 자율성(Temporal Autonomy)을 측정할 수 있는 '재량시간'이 그것이다(Goodin, Parpo and Kangas, 2004; Goodin, Rice, Bittman and Saunders, 2005; Rice, Goodin and Parpo, 2006; Goodin, Rice, Parpo and Eriksson, 2008). 재량시간의 철학적 기원은 '자율성' 개념에서 비롯된다. 자율성은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선택하고 형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7) 첫 번째 정의인 자신의 원칙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⁵⁾ 기본소득이 임금중심주의와 가족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는 까닭은 제도의 중요한 속성인 무조건성, 보편성, 개인성에 기인한다. 특히 가족중심주의에 영향을 미칠 '개인성'에 대한 연구는 향후 더욱 진척되어야 할 분야일 것이다.

⁶⁾ 여기서 굳이 탈노동 원리를 사용한 것은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 원리를 넘어서고, 이후 페미니스 트들의 탈가족화 논쟁을 수용하는 의미로서, 나아가 폴라니가 주장했던 광의의 탈상품화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해 보다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두 번째 정의에 축자적으로 우선하며, 두 가지 의미의 '자율성'을 모두 가질 때 높은 '자율성'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자율성'은 '자율성' 일반개념의 하위집합인데, '시간자율성'은 단순히 자신의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넘어서 시간에 대해 선택하고 그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oodin et al., 2008: 27-34).8)

그러나 재량시간은 기존 시간-소득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유 시간'과는 완전히다른 개념이다. '자유 시간'은 개인이 실제로 하루 동안 사용한 근로활동과 관련된 유급노동시간, 가사 및 돌봄 관련 무급노동시간, 수면 및 식사 등 개인돌봄시간을 차감하고 남은 시간으로, 시간자원에 대한 '소비'와 유사한 개념이다(Rice et al., 2006: 3). 반면 재량시간은 하루시간에서 사회적으로 엄격히 측정된 필수영역(strictly necessity)에서의 활동시간을 차감한시간, 즉 시간선택권이 전혀 없는 필수영역이 아닌 시간, 즉 시간자원에 대한 통제(control)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Rice et al., 2006: 3; Goodin et al., 2008: 30). '재량시간'과 '자유 시간'의 근본적 차이는 시간사용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재량시간은 '가처분시간' 개념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유 시간'을 통해 '자율성'을 측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주요 활동을 하고 남은 시간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주로 임금노동과 무급노동시간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유급/무급노동의 양은 가구마다 달라 동일한 맥락에서 '자유 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시간량을 가지고 개인의 시간자율성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자유 시간'은 쓰고 남은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의 시간 통제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가 시간빈곤에 해당할 수 있고(Rapoport and Rapoport, 1977; Wajcman, 1998), 자발적 선택에 의해 시간 빈곤이 된 경우와 어쩔 수 없이 시간빈곤이 된 경우를 구분할 수 없다(Barsadi and Woden, 2010).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통제한 뒤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Korpi, 2000), 이에 부합하는 개념이 재량시간이다(노혜진, 2013). 재량시간의 핵심 개념인 '필수영역'은 Marx(1858/1972)의 '자유'가 필요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며, 필수적인 노동을 줄이거나 철폐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조작화한 것이다(Goodin et al., 2008; 4).9)

재량시간의 측정은 하루 시간에서 사회적으로 측정한 최소필수시간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필수영역은 '경제적 시간(economic time)', '사회적 시간(social time)', '신체적 시간 (personal care time)'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시간은 가구소득이 해당 사회에서 빈곤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노동시간을 의미하며, '사회적 시간'이란 가사노동과 돌봄과 같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무급노동시간을, '신체적 시간'은 수면, 식사, 목욕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개인돌봄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최소한의 필수시간은 사회적 기준에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측정된다.

재량시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시간빈곤연구나 시간-소득 결합분석연구에 비해 대체

^{7) &}quot;having not only the capacity to form principles of one's own' but also the capacity to act upon them" (Goodin, et al., 2008: 29)

^{8) &}quot;the freedom to spend one's time as one pleases, outside the necessities of every life" (Rice et al., 2006: 2)

⁹⁾ 여기서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자유의지의 권리도 아니며, 집단적 자율의 조건으로 바라본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삶은 "필요와 외적 방편에 따라 결정되는 노동이 끝날 때만" 시작하는 자유 이며 "물질적 생산의식의 영역 너머"에 있는 영역에 자리한다(Marx, 1981: 959). 그러나 Goodin의 재량시간이 이를 반영한 지표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Fitzpatrick, 2003),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로 소수이다(Kalenkoski and Hamrick, 2014: 6652). 먼저 재량시간에 관한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재량시간 연구에서 기념비적인 저서인 『Discretionary Time: A New Measure of Freedom』(Goodin et al., 2008)는 '자유의 새로운 측정'이라는 부제로 복지체제, 젠더체제, 가구체제별 시간자율성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Goodin et al.(2008)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되 측정방법을 간단히 한 영국의 『Time and Income Poverty』(Burchardt, 2008) 보고서가 있다. Goodin과 그의 동료들은 일찍이 「the Real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논문을 통해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1990/2007)가 실제 사람들의 삶의 양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빈곤, 평등, 효율성, 사회적 안정성, 사회통합과 같은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한 가지 염두 해 두어야 할 사실은 현금이전이 곧바로 재량시간의 증가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개입의 효과는 현금이 정확히 누구에게 주어지고, 누구를 위해 주는지에 따라서, 조세-현금이전 정책이 시간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Goodin et al., 2008: 149). 결론적으로 복지체제와 가구체제 그리고 젠더체제별로 국가정책이 사람들의 재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Goodin et al., 2008: 149).

한편, 재량시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단 두 개에 불과하다. 먼저 Goodin et al.(2008)의 재량시간 개념과 측정방식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빈곤여성의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가 있다(노혜진, 2013). 분석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수준이 높고, 빈곤여성의 경우 남녀간 더욱 큰 편차를 보였다. 또한 빈곤하지 않은 여성가구주의 박탈 문제가 부각되었다.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재량시간 활용과 시간관리실태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시간사용의 젠더불평등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사용을 분석하여 특히 여가시간의 다양한 경험 차이와 분포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박건, 2016).

이를 종합하면, 정부의 사회정책(조세와 현금이전)이 곧바로 재량시간의 증가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의 사회정책이 사람들의 재량시간을 증가시킨다면 그들의 시간자율성을 높인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정책은 복지체제와 젠더체제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며, 세부 구성적 특성으로는 성별, 가구유형에 따라 재량시간의 편차는 달라질 수 있다. 시간자율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에 대한 책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별 지위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는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Bianchi, Mikie, Sayer and Robinson, 2000; Jacobs and Gerson, 2004; 주은선, 2014; 조미라, 2017). 이러한 국내·외 재량시간 그리고 시간과 소득의 결합분석의 선행연구들은 시간과 소득의 상충관계를 잘 포착하기 위해 19~64세 이하(prime-age)라는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기혼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일-생활 균형정책과 관련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시간-소득의 결합분석이나 재량시간 연구에서 미취업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보통 배제되는데, 최소필수 유급노동시간에서 시간당 임금률에 대한 정보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3.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1) 기본소득과 여성주의자들의 전망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소득 논쟁은 주변에 머물러왔다. 기본소득 논의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 봤을 때, 주로 생산-노동-분배의 관계 재탐색, 지속가능성, 공유부에 대해 핵심의제로 놓인 반면, 젠더정의 혹은 재생산 노동 측면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넘어간 측면이 있다.¹⁰⁾ 기본소득을 개념화한 반 빠레이스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무급노동에 대한 '인정'으로 지급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며, '권리'로써의 급여라고 확인했다(Parijs, Jacquet and Salinas, 2000: 25).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누구이며 과연 '보편적 기본소득이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다. 젠더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모든 시민에게 권리로서 급여를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여성에게 어떠한 효과를 낳을지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개별성의 특징으로 인해, 젠더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젠더간 어떠한 효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진척되어 왔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의 핵심 테마는 '노동시장'과 '돌봄 영역'에서의 젠더평등이다. 어떻게 하면 여성이 '돌봄'이라는 젠더화된 역할에 갇히지 않고 돌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전략은 프레이저의 세 가지 모델에 따라살펴볼 수 있는데,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Universal Breadwinner Model)로 대표되는 고용조건 개선 및 육아휴직과 같은 평등을 강조하는 전략, 돌봄 노동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는 차이의 전략인 '동등 돌봄제공자 모델'(Caregiver Parity Model), 이를 통합한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이 그것이다(Fraser, 1994/2017).11)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이슈를 세 가지 모델의 관점에서 간략히 고찰해보자(McLean, 2015).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논쟁의 첫 번째 이슈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무조건적 현금급여를 주었을 때 기대/우려하는 바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의 유급 근로유인 '선택'과 관련한다. 이 경우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며,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 상당한 임금격차와 빈곤위험 등의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Robeyns, 2001). 기본소득은 특히 어린 아동이 있는 저임금/저숙련의 여성이 양육을 위해 집안에 머무르게 하여, 노동의 성별 분업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Gheaus, 2008).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본 맹점은 남성이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측면, 즉 노동을 구성하는 '남성중심적 젠더규범'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유급고용' 자체에만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McKay, 2001). 오히려 기본소득은 유급고용시간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독립을 촉진시키고, 무급가사노동의 개인·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비판한다(Robeyns, 2001; Pateman, 2004).

둘째, 일부 학자들은 '동등 돌봄제공자 모델'에서 기본소득이 너무 중립적이어서 돌봄을 보상하거나 가치화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로 Alstott(2004)은 어린 아동이 있는 돌봄제공자에게 현급 급여를 지급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옹호자들은 기본소득의 중립성을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특성으로 꼽았다. 중립성은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제공자'모델로의 평등과 차이의 정책을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Fitzpatrick, 1999; Bambrick, 2006; Zelleke, 2008; Birnbaum, 2012). 또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어느 누구도 노동자 혹은 돌봄제공자로 구획하지 않고 시민으로서 대

¹⁰⁾ 이에 대한 문헌으로는 박이은실(2013)의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를 참고하라.

¹¹⁾ Fraser(1997/2017)은 무급돌봄노동 급여기준에 따라, 유급시장노동에 대한 보상 중심인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보상 중심의 동등 돌봄제공자 모델, 마지막으로 보편적 돌봄제 공자 모델로 분류하였다. 먼저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은 여성도 남성과 같이 노동시장 참여가 높아지고 노동시장을 통해 사회보장수급권 비율이 높아지거나 돌봄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은 없는 국가로, 미국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동등 돌봄제공자 모델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여 돌봄 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로 독일이 속한다. 결국 남녀 간 역할 차이를 인정하고 돌봄제공자로서의 지위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은 남녀가 모두 동시에 노동자이자 돌봄제공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하는 국가로 노동시간 감소와 돌봄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웨덴이 여기에 속한다.

하며, 남성중심적 젠더편향을 가정하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의 단점을 피하는 동시에 (McKay, 2001) 국가와 시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돌봄 노동의 일정부분을 가치화할 수 있다 (Robeyns, 2001; Baker, 2008).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국내 학자를 중심으로, 무급가사노동에서도 '돌봄 노동'에 대한 특성이 간과되었음을 비판하면서,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사회·경제적 책임논의가 기본소득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윤자영, 2016).

이러한 찬반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젠더(불)평등'을 보는 관점과 '여성을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어디에 위치시키는가'에 기인한다. 일면에서는 집단으로서 남성의 지위와 동등한 여성을 가정한 가운데 '젠더중립적인' 남녀평등 정책을 지향할 경우(separate spheres), 혹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여 돌봄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전략(the Recognition of Difference)도 있다(Zelleke, 2011). 그러나 전자의 동등 정치는 기존의 남성 중심주의적 젠더위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후자의 차이의 정치는 젠더차이가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젠더 근본주의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페미니스트들의 찬반논쟁은 현재의 젠더불평등을 공고화 하지 않으면서, 즉 '울스턴 크레프트의 딜레마'(Wollstonecraft's Dilemma)에 빠지지 않으면서, 젠더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간다(O'Reilly, 2008).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과 '동등 돌봄자 모델' 지향이 혼재해 있는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은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일·가정양립정책의 경우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즉 맞벌이가구의 돌봄과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계되어있고 이러한 프레임 속에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 기존제도와의 관계와 임금률, 가구 내에서의 생계부양자 역할에 따른 여성의 고용선택과 돌봄 선택 변화에 대한 예측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둘 것이다. 또한 동등돌봄자모델을 지향하는 현재의 육아휴직제도, 아버지휴가제도, 혹은 아동수당, 양육수당제도들의 구성들이 현재 '돌봄노동의 성별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의 지급은 기존의 성별분업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들을 살펴보는 것의 이점은 단순히 기본소득의 지급이 젠더평등에 얼마나 혹은 어떻게 기여하는가의 관점에서, 현재의 젠더체제의구성 자체에 관심을 두게 하며 이러한 체제 내에서 기본소득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의논의로 확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이 젠더정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현재의 젠더불평등을 인식한 뒤에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재분배와 시간재분배는 젠더정의를 위해 필요한 원칙¹²⁾이라는 고려한다면(Fraser, 1994/2017), 현재 젠더불평등 구조에서 기본소득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증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2) 기본소득과 재량시간의 관계

기본소득의 목적인 '자유'의 실현이 '소득'과 '시간'의 함수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Marx가 '자유는 노동시간 단축에 달려있음'을 조명한 이래 자율적 맑시스트들과 후기 산업주의 좌파들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위한 정책적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제안하였다. [13] 비슷한 맥락에서 국내 노동당의 경우 기본소

^{12) 7}가지 규범에는 재분배가 필요한 3가지 평등 원칙(소득평등, 여가시간평등, 존중평등)과 반빈곤 원칙, 반착취 원칙, 반주변화 원칙, 반남성중심주의 원칙이 있다(Fraser, 1994/2017: 165-171).

¹³⁾ 자율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가 말한 '자유는 노동시간 단축에 달려있다'를 주장하면서 "일할 권리"가 아니라 "노동거부"를 주장한다. 노동거부의 핵심은 노동을 자본주의적 관계의 제 1의 기초에 파악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자본축적이 아니라 노동자의 관점에서 임금을 버는 것이 첫 번째 관

득-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을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제시하였다. 한편 학계에서는 노동투 입량이 감소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새로운 복지전략으로 '소득보장'과 더 많은 '자유 시간' 확 보를 강조하거나(주은선, 2014), 자유 실현과 관련한 '삶의 질'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 주로 '시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보다 직접적으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시간'을 주목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Standing(2009)은 노동시장의 비정규성이 삶의 불안정성을 낳았고 이로 인해 '시간통제의 상실'이라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맑시스트 페미니스트인 Weeks(2011/2016)는 "노동을 둘러싼 투쟁은 그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 동 바깥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시간과 돈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면서, 기본소득보 장과 주 30시간의 노동 요구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자유의 확장은 시간의 확보와 연결되며, 시간자율성을 위한 소득보장은 필연적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페미니스트 학자들 중 에서 자유시간과 소득보장에 관한 관점을 제시한 사례도 존재한다.14) 젠더정의를 실현하기 위 해 복합적 규범을 제시한 Fraser(1994/2017)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와 시간재분배는 젠더정의 를 위해 필요한 원칙이다. [15] 일부 학자들은 기본소득이 노동거부와 젠더정의를 실현할 수 있 으려면 충분한 수준의 금액이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만 임금노동이 필수가 아니 라 선택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Pateman, 2003: 141; Gorz, 1999: 81-84; Mckay, 2001: 99; Weeks, 2011/2016: 218). 이러한 연구들은 소득과 시간의 결합분석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충분한 근거들이 되며, 재량시간은 이를 포착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복지자본주의 체제의 시간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2000년대 초를 전후로 진행되었다 (Goodin, Headey, Muffels and Dervin, 1999; Leisering and Leibfried, 1999; Gershuny, 2000; Fitzpatrick, 2004: 198에서 재인용). Goodin et al.(1999: 225-236)은 '결합된 자원자율성(combined resource autonomy)'을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득과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둘 중하나라도 충분하지 않으면 진정 자율적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가구 내개인들의 소득과 시간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직적 재분배보다는 소득과 시간의 생애주기적 재분배가 복지국가가 담당해야 할 가장 적절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Fitzpatrick, 2004: 214).

이후 Goodin(2001)은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체제들을 복지와 일(welfare and work)과 관련해서 분류하였는데, 보수주의 복지국가 레짐의 경우 '복지 없는 노동(work not welfare)'을, 조합주의 복지국가 레짐은 '일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ork)' 마지막으로

심사이다. 노동거부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노동시간의 감소와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줄이는 것이며, "노동윤리에 대한 불복종"(Berardi, 1980: 169)의 실천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자율적 마르크스주의자에는 『게으를 권리』의 저자이며 마르크스의 사위인 폴 라파르크(Paul Lafargue)를 선구자로하여 하트와 네그리(Hardt and Negri), 비그노(Virno) 등이 포함된다(Weeks, 2011/2016: 151-176). 나아가 노동거부가 무급가사노동에 적용될 때, 현재의 가족중심 조직화와 노동의 젠더분업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된다(Weeks, 2011/2016: 198). 한편, 후기 산업주의 좌파는 노동시간 단축에관심을 가졌는데 이를 통해 노동력을 신장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Gorz, 1989: Little, 1998: Fitzpatrick, 2003: 124).

^{14) &}quot;선택권을 가지려면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갖는 것은 적게 일하는 것을 뜻한다."(Dalla Costa and James, 1973: 83; Weeks, 2011/2016: 200에서 재인용) "이제까지 노동계급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출퇴근 카드를 찍고 왔다가 찍고 나가며 자본이 규정한 노동시간을 따랐다. 이것이 우리가 자본에 속한 시간과 우리 자신에게 속한 시간을 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번도 속한 적이 없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언제나 자본에 속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대해 자본더러 값을 치르게 할 때이다."(Cox and Federici, 1976: 12; Weeks, 2011/2016: 207)

^{15) 7}가지 규범에는 재분배가 필요한 3가지 평등 원칙(소득평등, 여가시간평등, 존중평등)과 반빈곤 원칙, 반착취 원칙, 반주변화 원칙, 반남성중심주의 원칙이 있다(Fraser, 1994/2017: 165-171).

사민주의 복지국가 레짐의 경우 '복지와 노동(welfare and work)'으로 재분류하였다. 보수주의 국가들의 경우 복지와 노동은 서로를 구축(crowding-out)하는 반면, 사민주의 국가들의경우 노동과 복지는 보완적이거나 둘 사이 중간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분류에 근거해 Goodin(2001)은 '노동 없는 복지(welfare without work)'를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m)라고 명명한다. Goodin의 탈생산주의는 '자율성'을 핵심가치로 하여,근로조건에 관해 완화된 태도와 관대한 사회적 급여를 결합한 특성을 지닌 체제로 보았으며,이 복지체제의 초기국가로 네덜란드를 사례로 들었다(Fitzpatrick, 2003: 96). 탈생산주의자들중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있었으며, 탈생산주의자들은 사민주의자들보다 더욱 '자율성'을 강조하였고, 시민권으로서 주어지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통해 사람들의 시간자율성을 지원할 수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임금노동으로부터의 의존을 줄여야 더 많은 자유시간을 확보할 수있을 것으로 보았다(Fitzpatrick, 2010: 2).

이러한 '탈생산주의'는 기본소득의 '탈노동'원리와 연결되며, 생산주의(productivism)와 탈생산주의의 관계는 앞서 논의한 노동사회와 탈노동사회의 관계와도 중첩된다. 생산주의는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고용이 주요 수단이며, 생산성을 위해 비공식 활동보다 공식 활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노동의 대체가능성이 크고 노동 분업이 확대된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며, 노동은 주로 유급고용과 관련된다. 현재 복지체제들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산주의에 기반하며, 재생산은 생산에 종속된다. 이러한 탈생산주의체제에서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관심과 재량시간 연구는 이후 Goodin의 탈생산주의 레짐에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자율성'과 '보장'의 상보적 관계에 대한 일련의 논의들로 발전했다.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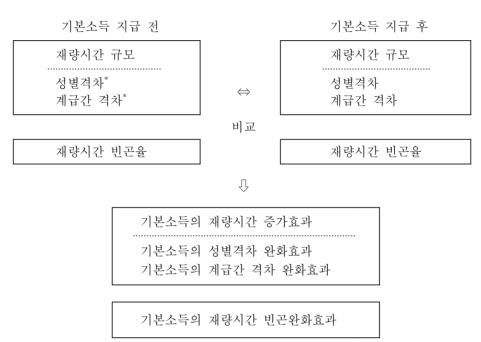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이하 KLIPS) 17차 개인·부가·가구조사(2014년)와 18차 가구조사(2015년)이다. KLIPS 17차 년도 부가조사는 '시간사용과 삶의 질'을 조사함으로써 시간 사용관련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재량시간(시간자율성)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분석단위는 개인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취업자 개인 4,525명이다. 연령제한을 둔 이유는 노령인구의 경우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가구 내 불평등을 충분히 고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9세~64세는 시간과 소득의상충관계가 가장 잘 관찰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손문금, 2005; 김수정·김은지, 2007; 허수연, 2008; 노혜진, 2012, 2013). 재량시간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시간활용 범주는 평일로 한정한다. 시간사용패턴은 평일과 주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평일 시간사용 편차가주말 시간사용의 편차보다 더 작기 때문이다.

2.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 지급이 성별 재량시간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기본소득이 남녀간 시간재분배를 위해 기능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상태의 성별 재량시간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고, 이후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을 때 재량시간의 분포와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한다. 나아가 세부적으로 여성 내 소득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의 재량시간 규모변화와 격차측정을 통해 여성 내에 어떤 집단에서 재량시간 변화폭이 큰지를 확인한다.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대상범주를 좁혀 가며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 지급 후 성별 재량시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기본소득 지급은 여성의 재량시간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주) 성별격차 = 여성 재량시간 / 남성 재량시간 계급간 격차 = 빈곤층 재량시간 / 비빈곤층 재량시간

3. 변수정의

본 연구에서의 기본소득 모델은 19세 이상 성인에게 월 30만원 씩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형으로 설정한다. 급여수준은 다수의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월 30만원을 채택하였으며,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체를 가정하지 않았다. 기존 제도를 대체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에게 월 5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완전기본소득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이 기능중복과 수급/비수급자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대체될 수 있다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월 30만원의 '부분기본소득형'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경우, 두 제도간의 경합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탈상품화 수준이 낮아질수 있다.16) 아동수당은 기본소득 모델에서 제외하였으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세율은

¹⁶⁾ 세부적으로 기존 공적이전제도의 대체를 가정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다수의 기본소득모델연구에서 완전기본소득형 도입 후 생계급여는 대체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조사분석시점인 2014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 즉 맞춤형 급여가 아닌 통합급여 방식으로생계급여만 따로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분석시점은 제도 개편 이전이므로 제도 개편 이후의 내용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산조사의 엄격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조세효과와 공전이전소 득 효과를 관찰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본소득 지급전의 상태는 KLIPS의 가구소득분류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된 '세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다.¹⁷⁾

분석에 사용된 변수 크게 기준변수인 성별변수를 제외하고, 개인특성, 가구특성, 고용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참조)

[표 1] 변수 구분 및 속성

구분	변수명	속성
	성별	(1) 남 (2) 여
개인특성	학력	(1) 고졸이하 (2) 초대졸 이상
	연령	(1) 만 19-34세 (2) 만 35-64세
	배우자 유무	(1) 무배우 (2) 유배우
가구특성	미취학 아동 유무	(1) 없음 (2) 있음
777778	가구 유형	(1) 맡벌이 가구 (2) 홑벌이 가구
	소득 빈곤 여부	(1) 빈곤 (2) 비빈곤
고용특성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자영업자

4. 측정방법

재량시간의 측정은 Goodin et al.(2008)을 방법을 차용한 노혜진(2013)에 제시된 방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재량시간은 하루 1,440분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소 필수시간을 차감한 값을 말하며, 사회적 최소 필수시간에는 경제적 시간, 사회적 시간, 신체적 시간으로 분류할 수있다.

Dt = 1,440 - Pt - Ut - Ct

Dt = 자유재량시간

Pt = 유급노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경제적 시간)

Ut =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사회적 시간)

Ct = 개인돌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신체적 시간)

넓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모델 적용이 국민기초생활제도를 대체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근로장려세제(EITC)도 수급규모가 작고 그 액수가 작기 때문에 대체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역시 대체관계가 논의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 도는 2014년 7월 이전까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 2만원 ~ 최대 9만 9천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에서 7월 제도 개편이후 최저 2만원~ 최고 20만원(2인 수급부부 가구의 경우 3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6.8%(약 435만 명)이었다. 그러나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의 대체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하였다. 한국의 공적이전 평균수급액이 높지 않다는 점과 분석자료의 한계로 기존제도와의 관계 조정을 가정하지 않았으나, 실제 모델 설계 시 필요한 작업이며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¹⁷⁾ KLIPS의 가구소득 분류기준에 따르면 세후 가처분소득에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 득과 사적·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며, 비소비지출(국민보험료와 의료보험료)는 공제된다.

사회적 최소 필수시간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측정원리는 사회적 최소값을 개인이 실제 사용한 값으로 나누는 것이다. 각 영역별 최소필수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영역은 '가구별 최소 필요소득'을 벌기위해 개인이 반드시 일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근로외소득, 시간당임금률이다. 먼저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상대적 빈곤선을 적용하여, 균등화지수를적용한 중위소득의 60%로 측정한다.18) 따라서 가구의 총 욕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빈곤선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곱한 값이다. 다른 소득원이 없다면 근로소득을 통해 벌어야 하는 가구의 총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소 필요한 유급노동시간은 빈곤선 수준의 소득을벌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소득, 공·사이전소득 등 다양한 근로외소득이 존재하며, 정확한 의미에서 임금노동을 통해 벌어야 하는 소득은 가구소득에서 근로외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이 때 근로외소득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득 10분위별 근로외 소득의 중위값을 적용하였다.19) 한편, 기본소득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를 통한 필수유급노동시간의 축소를 가정한다.20) 즉, 근로외소득에월 30만원(기본소득)에 19세 이상 가구원수를 곱한 값을 합한 값이 해당 가구의 기본소득을통한 근로외소득의 증가분에 해당한다²¹⁾.

이렇게 산출된 '가구별 최소소득'을 가구내 취업자가 벌어들이는 시간당 임금으로 나눈 값이 취업자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필수 임금노동시간이다. 여기서 가구내 취업자가 2인 이상인경우 생계부양의 책임이 1/n인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각 개인의 필수임금노동시간은 '가구최소소득'을 가구 내 취업자수로 나눈 뒤, 이를 다시 개인의 임금률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런데 필수 임금노동시간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기초 욕구에 대한 지출비(교육비, 의료비, 주거비)이다. (22) 추가 지출이 요구될 경우 각 가구원들은 더긴 시간의 임금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자녀와 대학생 이상 자녀수를 반영하여 평균 교육료를 산출하여 가구별 최소소득에 합산하였다. 한편, 의료 및 주거비(월세)의

¹⁸⁾ 노혜진(2012, 2013)은 한국노동패널에서 소득이 과소보고된 측면을 고려하여, 빈곤선을 중위소득 60%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따르며, 균등화 세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¹⁹⁾ Goodin et al.,(2008)은 빈곤선의 25~75%에 있는 가구 대상으로 평균값을 계산하여 근로외소득을 차감하였으나, 노혜진(2013)은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서도 근로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른다.

²⁰⁾ 이것에 대한 의미는 결론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²¹⁾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 설계는 만 19-64세 성인 취업자에게 월 30만원 지급을 가정하였으므로, 가구 당 기본소득액수는 (기본소득급여 × 19세 이상 가구원수)로 측정하였고 이를 근로외소득에 합산하였다.

²²⁾ 노혜진(2013)의 연구에서는 보육비만 고려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가구의 기초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분(교육비, 의료비, 주거비)을 가처분소득에서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통해 보다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추정하려는 연구가 있었다(이병희·홍민기·이현주·강신욱·장지연, 2014; 이현주·장지연·전병유, 2017). 이러한 방법은 가구의 기초욕구 지출분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한다. 먼저 주거비의 경우 월세로 한정하였다. 자가나 전세의 경우 주거비를 산정하기 어렵고, 관련 부채 등은 재산에 관련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교육비는 공교육과 사교육비를 포함한다. 이러한 지출 영역에 대해 사회의 평균 지출을 기초수준의 지출로 설정하며, 평균지출은 지출이 있는 가구에만 한정하고 지출이 없는 가구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이병희 외, 2014). 교육비의 경우 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대학생 이상 자녀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먼저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들의 총 교육 및 보육비를 합한 비용을 자녀수로 나누어 일인당 교육비 값을 구하고, 전체 평균값을 산출한다. 대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되, 정규등록금을 반영하였다.

경우 이병희 외(2014)의 연구방법을 따르되, 지출이 있는 가구에만 각 영역별 평균 지출분을 구하여 합산하였다. 이상의 과정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내 취업자가 n명인 경우>

 $Pt_n = [\{(inpov \times equi) + bfee - etcin\} \div num] \div eachwager$

inpov =

equi = 가구균등화지수

bfee = 가구당 기초지출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etcin = 근로외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공·사이전소득)

num = 가구 내 취업자 수

eachwager = 취업자 개인의 시간당 임금

돌봄과 가사노동이 포함된 사회적 영역의 경우, 가구별 최소 무급노동시간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가구 내 모든 가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무급노동시간을 합산하여 가구별 총 무급노동시간을 산출한 뒤 가구균등화지수로 나누어 균등화시키면, 개인단위의 무급노동을 산출할 수 있다. 균등화 무급노동시간 중위값의 50%를 무급노동시간의 빈곤선, 즉 최소 무급노동시간으로 정의한다. 이때, 성별 미취학 아동유무에 따라 무급노동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한 뒤 각 집단별 중위값을 별도로 산출하여 계산한다. 23) 이후 개인의 무급노동시간의 빈곤선에 균등화 지수를 곱한 값이 '가구별 최소 무급노동시간'이다. 이를 다시 개인 단위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각 가구당 가구주와 배우자가 실제 사용한 무급노동시간을 측정하여 합산한 후 각 구성원이 무급노동을 수행한 비율을 산출한다. 이 값이 실제 개인이 무급노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책임의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가구별 최소 무급노동시간에 개인의 비중을 곱한 값이 개인 단위 최소 무급노동시간이다. 이를 명시한 가구별 최소 무급노동시간(Ut)의 식은 다음과 같다.

<19세~64세 성인이 가구 내 1명인 경우>

 $Ut_1 = unpov \times equi$

<19세~64세 성인이 가구 내 2명 이상인 경우>

 $Ut_2 = (unpov \times equi) \times unpaidr$

unpov = 개인 무급노동 빈곤선 unpaidr = 가구 총 무급노동시간 중 개인의 무급노동시간 비중 equi = 가구균등화지수

마지막 필수영역은 신체적 영역이다. 19세 이상 64세 이하 개인이 하루 동안 실제 개인돌봄에 사용한 시간의 중위값은 2014년 기준 600분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라 최소 개인돌봄시간 기준을 중위값의 80%로 설정하였고, 이를 모든 연구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노혜진, 2012, 2013; Goodin et al., 2008). 이를 종합하면 재량시간은 최종적으로 아래의

²³⁾ 노혜진(2013)의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라 최소 무급노동시간을 있는 경우 아동이 있는 경우 141분, 110분(2004년/2009년), 아동이 없는 경우 49분, 45분(2004년/2009년)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무급노동시간의 성별격차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성별 내에서도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무급노동시간 빈곤선을 산출하였다.

산식 중 하나 이상의 과정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 내 1인 이상의 성인이 존재할 경우>

$$DTn_1 = 1,440 - [\{(inpov \times equi) + bfee - etcin\} \div hnum] \div eachwager - (unpov \times equi) - carepov$$

<가구 내 2인 이상의 성인이 존재할 경우>

$$DTn_2 = 1,440 - [\{(inpov \times equi) + bfee - etcin\} \div hnum] \div eachwager - \{(unpov \times equi) \times unpaidr\} - carepov$$

carepov = 빈곤선 (중위값의 80%)

공적이전제도가 재량시간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Goodin et al., 2008: 40-53, 133-135). '정책개입효과(state impact)' 지표는 사람들의 '정책개입 후 재량시간 (post-government discretionary time)'과 '정책개입 전 재량시간(pre-government discretionary time)'의 차로 측정한다. 여기서의 '정책개입 후 재량시간'은 '순 가처분소득' 개념과 유사한데, 세금을 지불하고 정부의 공적이전급여를 받은 뒤의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의한 '효과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량시간'의 경우 평균값을 산출한다. '재량시간 증가효과'는 각 대상별 기본소득급여 지급 후 재량시간 평균값에서 기본소득 지급 전 재량시간 평균값의 차를 말한다. 둘째, '성별격차'는 여성 재량시간에서 남성 재량시간을 나눈 값이며, '성별격차 완화효과'는 기본소득 급여 지급 후 성별격차 값에서 기본소득 지급 전 성별격차 값을 차감한 값이다. '계급간 격차'는 빈곤층의 재량시간에서 비빈곤층의 재량시간을 나눈 값으로, '계급격차 완화효과'는 기본소득급여 지급 후 계급간 격차 값에서 기본소득 지급 전 계급간 격차 값을 차감한 값이다.

Ⅳ.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전, 재량시간 측정에 필요한 값들은 (표 2)와 같다.

[표 2] 재량시간 측정 시 필요한 값

	구분						
	균등화 소득빈곤선	(연/만원)	1,465.1				
		1분위	600.0	6분위	410.0		
	연간 근로외소득*	2분위	478.0	7분위	377.0		
0715	중위값 (만원)	3분위	412.0	8분위	350.0		
유급노동		4분위	305.0	9분위	494.0		
시간		5분위	328.0	10분위	960.0		
	ગેર ગેરમો	교육비	30 × 고등학생 이하	자녀 수	-11 =1		
	기초 지출비 (월평균/만원)	亚丑川	35 × 대학생 이상	자녀 수	해당 가구만 적용		
		월세	11.34] /미 단 식중 		

	구분						
	의료비				4.9		
	시간당 임금률	(nl ol)	1	V	Mean	Median	S.D.
	기신경 급급포	(인전)	4,5	525	1.56	1.25	1.78
		남	미취	학 아동무		124)	
무급노동시간	균등화무급노동빈곤선 (하루/분)		14	미취	학 아동유		20.12
下日エマハゼ			여	미취	학 아동무		37.5
		9	미취	학 아동유	69.28		
개인돌봄시간	개인돌봄시간 ' (하루/분)	빈곤선				480	

주) 근로외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류한 결과는(표 3)와 같다. 19세 이상 64세 이하 취업자로 제한한 총 분석대상의 사례수는 4,525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 2,784명(61.5%), 여성 1,741명(38.5%)으로 나타났다. 소득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인구는 총 498명(11.1%)으로 전체빈곤인구의 284명(57.0%)이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14명(43.0%)이였다. 먼저 개인 특성을 각각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낮은 고졸이하가 각각 남성 1,422명, 여성 98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성별과 관계없이 소득빈곤층의 76% 이상이 고졸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소득빈곤층의 경우 82%가 고졸이하 였다. 평균연령은 남성이 44세, 여성이 43세로 중장년층이 전체의 79.2%를 차지했으며, 이 중 남성 243명(5.4%), 여성 187명(4.7%)이 소득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자가 전체대상의 74.3%로 무배우자보다 3배 정도 많았으며, 소득빈곤층의 약 63%가 유배우자로 나타났다. 무배우자에서는 여성빈곤층(104명)이 남성빈곤층(78명)보다 소폭 많았던 반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는 남성빈곤층(206명)이 여성빈곤층(110명)보다 소폭 많았다. 미취학 아동 유무를 살펴보면,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가구에 속한 인구(3,765명)가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속한 인구(760명)보다 약 5배 정도 많았으며, 이 중 미취학자녀가 있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빈곤층의 약 88%가 미취학아동이 없는 가구에 속했으며 빈곤남성의 53.2%(233명), 빈곤여성의 46.8%(205명)이 이에 속했다. 한편, 생계부양 유형을 살펴보면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비율은 49.7% 대 50.3%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남성이 2570명, 여성이 708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빈곤층의 76%가 홑벌이 가구에 분포해 있었으며, 홑벌이 가구에 속한 소득빈곤층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소폭 높았다. 소득비빈곤층 여성의 경우 홑벌이가구보다 맞벌이가구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특성을 보면, 전체인구 대상 상용직이 58.9%(2,667명), 자영업자가 22.3%(1,007명)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남성의 경우 상용직(1,677명), 자영업자(706명), 임시직(205명), 일용직(196명) 순으로, 여성은 상용직(990명), 임시직(340명), 자영업자(301명), 일용직(110명) 순의 분포를 나타냈다. 상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과반수 이상이 소득빈곤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소득빈곤을 경험하는 남성 중 35.6%(101명), 여성소득빈곤층의 38.3%(82명)이 상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85명)에서, 여성의 경우임시직(66명)에서 소득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분포가 높았다. 정리하면, 남녀 모두 소득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고졸이하, 중장년, 유배우,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구 이거나 홑벌이

²⁴⁾ 노혜진(2013)의 연구에서는 균등화무급노동빈곤선을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으나, 이 안에서의 성별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완하여 위와 같이 구분하였다.

가구였다. 상용직을 포함한,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 여성의 경우 임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득빈곤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남성			여성		계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11
사례수	·(N)		2,784	2,500	284	1,741	1,527	214	4,525
	학력	고졸이하	1,422	1,219	203	986	809	177	2,408
개인 특성	4 -	초대졸이상	1,362	1,281	81	755	718	37	2,117
	연령	청년	541	500	41	400	373	27	941
		중장년	2,243	2,000	243	1,341	1,154	187	3,584
	배우자유무	무배우	623	545	78	541	437	104	1,164
		유배우	2,161	1,955	206	1,200	1,090	110	3,361
가구	미취학아동	없음	2,236	2,003	233	1,529	1,324	205	3,765
특성	미취역약중	있음	548	497	51	212	203	9	760
	가구형태	맞벌이가구	1,214	1,143	71	1,033	986	47	2,247
	77784	홑벌이가구	1,570	1,357	213	708	541	167	2,278
		상용직	1,677	1,576	101	990	908	82	2,667
고용	종사상지위	임시직	205	164	41	340	274	66	545
특성	57767171	일용직	196	139	57	110	69	41	306
		자영업자	706	621	85	301	276	25	1,007

2. 재량시간의 실태와 분포

1) 재량시간의 실태

개인의 시간자율성을 파악하기 위해 재량시간의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성별격차 및 계급간 격차, 재량시간 빈곤율을 각각 살펴보았으며 이를 성별, 소득빈곤 여부별로 세분화하여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재량시간 실태는(표 4)와 같다. 2014년 전체 분석대상을 기준으로 일평균 재량시간은 652.72분이며, 전체 남성의 일평균 재량시간은 708.28분, 전체 여성의 경우 563.86분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의 일평균 재량시간이 남성보다 144.42분이 낮았다. 이를 소득빈곤경험유무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재량시간이 가장 낮은 집단은 소득빈곤 여성이었다. 다음으로 남성빈곤층, 여성비빈곤층, 남성비빈곤층의 분포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소득빈곤층이 소득비빈곤층보다 재량시간이 일평균 220.26분 낮았으며, 빈곤층 내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재량시간이 일평균 85.8분 낮게 나타났다.

[표 4] 재량시간 실태

단위 : 일평균(분)

	전체		남성		여성 여성		
	신세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필수 유급노동시간	275.01	250.26	225.88	464.94	314.59	292.55	471.84
필수 무급노동시간	32.27	1.46	1.45	1.49	81.55	81.71	80.39
재량시간	652.72	708.28	732.67	493.57	563.86	585.74	407.77

(표 5)는 재량시간의 성별/계급간 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 분석대상기준, 여성의 재량시간은 남성의 재량시간의 79.6% 밖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빈곤층의 재량시간은 비빈곤층의 재량시간의 67.5%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둘째, 소득빈곤 여부에 따라 성별격차를 분석한 결과, 소득빈곤층보다 소득비빈곤층에서 여성의 재량시간과 남성의 재량시간의 격차가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 비빈곤층 여성은 비빈곤층 남성의 재량시간 평균의 약79.9%밖에 달하지 못하였으며, 소득빈곤층 내의 여성은 남성의 평균 재량시간의 82.6%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빈곤층의 재량시간이 평균적으로 소득비빈곤층보다 낮고 편차가 작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성별에 따라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계급간 재량시간 평균이 빈곤 남성의 재량시간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여성의 재량시간 평균은 소득빈곤여부와 상관없이 남성의 재량시간 평균보다 대체로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여성 내 계급간 격차에서 빈곤여성의 평균 재량시간이 비빈곤 여성보다 낮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소득빈곤 여성이 소득비빈곤 여성보다도 재량시간이 더 낮다는점에 주목해야 한다.

[표 5] 재량시간의 성별/계급간 격차

단위 : 일평균(분)

	성별 격차		계급간 격차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남성	여성	
0.796	0.799	0.826	0.675	0.674	0.696	

주) 성별 격차 = 여성재량시간/남성재량시간 계급간 격차 = 빈곤층 재량시간/비빈곤층 재량시간

마지막으로, 재량시간 중위값의 50%로 계산한 재량시간 빈곤율은 2014년 전체인구 대상 8.8%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의 경우 4.6%, 여성은 15.6%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재량시간 빈곤율이 약 3배 이상 높았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재량시간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빈곤층(36.9%)으로, 남성빈곤층(22.9%), 여성비빈곤층(12.6%), 남성비빈곤층(2.6%) 순이었다. 특히, 남성비빈곤층을 제외한 여성빈곤층, 여성비빈곤층, 남성빈곤층의 경우 재량시간 빈곤율이 10%를 웃도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6) 참조)

[표 6] 재량시간 빈곤율

단위 : %

_								
		전체		남성	여성			
		신세	전체	빈곤	비빈곤	전체	빈곤	비빈곤
	재량시간 빈곤율	8.8	4.6	22.9	2.6	15.6	36.9	12.6

주) 재량시간 빈곤율 = 재량시간 중위값 × 0.5²⁵⁾

2) 특성별 재량시간 분포

분석결과, 여성의 재량시간이 남성의 재량시간보다 하루 평균 약 2시간 20분이 낮아, 남녀 간 시간자율성이 평등하지 않았다. 특히 소득빈곤여부로 살펴본 결과 소득비빈곤층보다 소득

²⁵⁾ 평균 재량시간 중위값은 754.31분. 빈곤선은 377.15분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에서 재량시간이 낮았고, 소득빈곤층 내에서도 여성의 재량시간(407.77분)이 남성의 재량시간보다 약 1시간 25분 더 낮았다. 재량시간이 600분이 채 되지 않은 집단의 다수가 여성 집단이었으며, 여성 중에서도 학력수준이 낮거나, 중장년층인 경우, 소득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보다는 홑벌이 가구에서 그리고 무배우 가구보다는 유배우 가구에서, 미취학 아동이 없는 가구에서,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에 속한 여성들의 재량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시간자율성이 여성 내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중에서도 소득빈곤층 남성의 재량시간이 일평균 500분에 미치지 못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남성 집단의 재량시간은 평균 600분 이상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남성 전체 재량시간 평균(708.02분)보다 낮은 집단에는 종사상 지위가 낮은 임시/일용직 혹은 자영업자일 경우, 가구특성으로는 미취학 아동이 있거나 유배우 가구인 경우, 개인특성으로는 중장년층이며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이 속했다. 성별격차가 높게 나타난 집단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개인특성으로는 고졸이하, 중장년에서, 가구특성의 경우 유배우, 맞벌이가구인 경우, 고용특성으로는 임시/일용직일 때 여성과 남성의 재량시간 격차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 내 계급간 재량시간 분석결과, 여성 내에서도 가장 시간자율성이 낮은 집단을 확인 할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소득빈곤층 여성의 재량시간이 비빈곤층 여성에 비해 일평균 약 3시간 가량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빈곤층 여성의 경우 청년 빈곤여성을 제외하고 개인/가구/고용특성과 관계없이 약 500분 미만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빈곤층 여성 중에서도 고졸이하, 아동이 없는 가구와 홑벌이 가구에 속한 여성, 임시직과 자영업자에 속한 여성의 재량시간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비빈곤층 여성 내에서도 고졸이하, 중장년, 유배우, 임시/일용직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시간자율성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기본소득의 효과

1) 재량시간의 변화

본 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후 재량시간 규모 변화, 성별격차 및 계급 간 격차변화, 재량시간 빈곤율 변화를 각각 살펴보았으며 이를 성별, 소득빈곤여부(계급간)로 세분화하여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먼저 기본소득 지급 후 재량시간 증가효과는(표 7)과 같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모든 대상의 재량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을 때, 전체대상 일평균 재량시간은 709.74분으로, 지급 전보다 57.03분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최소 0.68분에서 최대 556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효과를 보지 않았고, 초과세율 없이 공적이전에 추가로 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가정했으므로 재량시간이 모든 대상에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30만원 지급으로 인해 남녀 재량시간 변화량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체 남성의 하루 평균 재량시간은 47.8분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 71.78분이 증가하여, 월 기본소득 30만원은 여성의 재량시간을 남성의 재량시간보다 일평균 약 24분 많이 증가시켰다. 이를 소득빈곤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기본소득지급 후 재량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빈곤층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순차적으로 빈곤층 남성, 비빈곤층 여성, 비빈곤층 남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은 소득비빈 곤층보다 소득빈곤층 남녀의 재량시간을 더 많이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증가효과

단위: 일평균(분)

분류	전체		남		Ó:		
ਦੁਸ	[전세	전체	빈곤	비빈곤	전체	빈곤	비빈곤
기본소득지급 전	652.72	708.28	493.57	732.67	563.86	407.77	585.74
기본소득지급 후	709.74	756.09	574.46	776.72	635.64	505.65	653.86
재량시간 증가효과*	57.03	47.80	80.88	44.05	71.78	97.88	68.12

주) 증가효과 = 기본소득급여 지급 후 평균 재량시간 - 기본소득 지급 전 평균 재량시간

다음으로 기본소득 지급 전/후 성별격차를 비교해보면, 전체 분석대상 기준 기본소득 지급 전 여성의 재량시간이 남성의 재량시간의 약 79.6%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 기본소득 지급 후 여성의 재량시간이 남성의 재량시간의 84.1%를 차지해, 기본소득 지급은 약 4.5%p의 재량시간 성별격차를 완화시켰다. 이를 소득비빈곤 집단과 빈곤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소득비빈곤 집단보다 소득빈곤 집단 내에서의 성별격차완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참조)

[표 8]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성별격차완화 효과 (단위: 일평균/분)

분류	성별 격차						
でザ	전체	비빈곤	빈곤				
기본소득지급 전	0.796	0.799	0.826				
기본소득지급 후	0.841	0.819	0.880				
성별격차 완화효과*	0.045	0.020	0.054				

주) 성별격차 = 여성재량시간/남성재량시간

성별격차완화효과 = 기본소득 지급 후 성별격차 - 기본소득 지급 전 성별격차

기본소득 지급 후 소득빈곤층과 소득비빈곤층 사이의 재량시간 격차 변화에 대한 값은(표 9)와 같다. 먼저, 전체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기본소득 지급 전 빈곤층의 재량시간이 비빈곤층의 재량시간의 67.5%였던 것이 기본소득 지급 후 74.6%로 변화하여 빈곤층의 재량시간의약 7.1%p 격차를 완화시켰다. 이를 성별집단 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 내의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재량시간 격차완화 효과가 높았다. 여성집단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 전여성 빈곤층의 재량시간이 여성 비빈곤층 재량시간의약 69.6%를 차지했던 것에서 기본소득지급 후약 77.3%를 차지하게 되어여성 내계급간 격차를약 7.7%p 완화시켰다. 결국 기본소득 계급간 격차를 완화시켰으며,특히여성 내에서의 소득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재량시간 격차를 큰 폭으로 완화시켰다.

[표 9]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계급간 격차완화 효과 (단위: 일평균/분)

 분류	계급간 격차*						
ਦੁਸ	전체	남성	여성				
기본소득지급 전	0.675	0.674	0.696				
기본소득지급 후	0.746	0.740	0.773				
계급격차 완화효과*	0.071	0.066	0.077				

주) 계급간 격차 = 빈곤층 재량시간/비빈곤층 재량시간

계급격차완화효과 = 기본소득 지급 후 계급간 격차 - 기본소득 지급 전 계급간 격차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빈곤완화효과는(표 10)과 같다. 먼저 2014년 전체 분석대상을 기준으로 재량시간 빈곤율을 산출한 결과,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 8.9%에서 지급 후 6.1%로 재량시간 빈곤율은 2.8%p 하락했다. 기본소득은 남성 1.4%p, 여성 5%p로 각각 완화시켜, 남성보다 여성의 재량시간 빈곤율을 더 큰 폭으로 완화하였다. 성별 내부의 계급별 빈곤완화정도를살펴보면 여성빈곤층(-8.6%), 남성빈곤층(-6.4%), 여성비빈곤층(-4.8%), 남성비빈곤층(-1.4%)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빈곤층의 재량시간 빈곤율을 상당수준 하락시켰으며, 특히여성빈곤층의 재량시간 빈곤율을 큰 폭으로 완화시켰다. 또한 남녀 소득빈곤층 뿐만 아니라여성 소득비빈곤층의 재량시간 빈곤율 완화정도(-4.8%)는 전체 빈곤율 완화정도(-2.8%)보다 컸다.

[표 10]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빈곤완화효과 (단위: %)

 분류	전체		남성		여성		
で用	신세 	전체	빈곤	비빈곤	전체	빈곤	비빈곤
기본소득지급 전	8.8	4.6	22.9	2.6	15.6	36.9	12.6
기본소득지급 후	5.6	3.2	15.8	1.8	9.3	23.4	7.3
빈곤율 차이	-3.2	-1.4	-7.1	-0.8	-6.3	-13.5	-5.3

주) 재량시간 빈곤율 = 재량시간 중위값 × 0.5

2) 특성별 재량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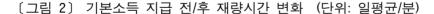
월 기본소득 30만원 지급으로 모든 집단에서 일평균 재량시간 약 57분이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이 약 1시간 26분, 남성이 약 56분 증가해 기본소득 지급은 여성의 재량시간을 남성보다약 24분 더 많이 증가시켰다. 또한 소득비빈곤층보다 소득빈곤층에서, 소득빈곤층 내에서도 여성의 재량시간 증가폭이 매우 높았다.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증가효과를 성별 내에서도 개인·가구·고용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가장 재량시간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빈곤여성과일용직 여성으로 일평균 약 100분가량 증가하였으며, 여성 중에서도 고졸이하, 임시직, 자영업자에서도 80분 내외의 증가폭을 보였다. 대다수의 여성의 재량시간이 남성들보다 상승한 가운데 빈곤남성의 재량시간 증가폭 또한 80분 이상이었으며, 임시/일용직 남성의 경우 일평균 재량시간이 60분 이상 증가하였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재량시간이 증가한 남녀 집단의 특성은 개인특성 중 학력수준이 낮거나, 고용특성에서 종사상 지위가 낮은 경우에서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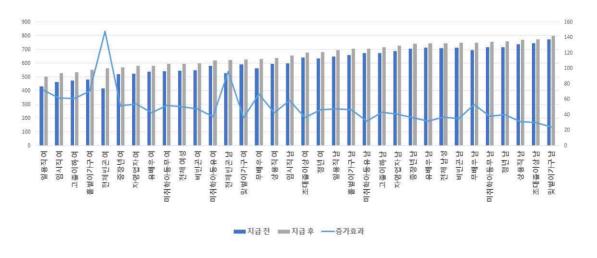
한편, 여성의 재량시간을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중장년, 맞벌이 가구, 무배우, 미취학 아동이 없는 가구에서 재량시간 증가량이 60분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 여성의 증가폭이 홑벌이가구 여성의 증가량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치였다. 소득빈곤층의 다수가 홑벌이 가구인 경우를 감안하는 동시에, 맞벌이가구의 경우 필수유급노동시간이 홑벌이가구보다 그리 높지 않지만 필수무급노동시간은 높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지급은 유배우 가구보다 무배우 가구에서 재량시간 증가량이 많았는데, 무배우 가구 중에서도 기혼여성의 재량시간 증가량(+86.82분)이 미혼여성의 재량시간 증가량(+64.5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혼무배우 여성이 미혼무배우 여성이나 기혼유배우 여성보다 필수유급노동시간이높고, 기본소득이 이를 큰 폭으로 낮춤에 따라 재량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취학아동이 없는 가구에 속한 여성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재량시간 증가폭이 컸다는 사실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혼인상태와 배우자 유무, 아동유무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아동이 없는 가구의 여성 중에서도 기혼무배우의 재량시간 증가폭(+87.13분)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이 있는 기혼무배우 여성의 경우의 증가폭도 75.51분으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에도 아동이 없거나 맞벌이가구, 중장년, 유배우일 경우 재량시간이 일평균 40분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본소득 30만원 지급은 전반적으로 소득비빈곤층 여성보다 빈곤층 여성의 재량시간을 일평균 약 30분 더 증가시켰다. 빈곤층 여성 중에서도 재량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자영업자(약 120분)이었고, 고졸이하, 무배우, 아동이 없는 가구, 맞벌이가구, 임시직, 일용직에서 일평균 재량시간이 100분 내외로 증가하였다. 비빈곤 여성의 경우에도 기본소득은 고졸이하, 임시/일용직에서 재량시간이 80분 이상, 중장년, 맞벌이가구, 미취학 아동이 없는 가구, 자영업자에서 70분 내외, 무배우자와 유배우자 집단에서 67분 이상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소득빈곤층 여성의 재량시간이 소득비빈곤층 여성의 재량시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빈곤층 내에서도 종사상지위가 낮은 자영업자, 임시직에서, 그리고 맞벌이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까닭은 해당 집단에서 필수유급노동시간과 필수무급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기본소득을 통해 필수유급노동시간을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빈곤여성 집단 내에서 무배우자, 미취학 아동이 없는 가구집단의 정보를 세부적으로확인하기 위해 혼인상태와 배우자유무를 함께 살펴본 결과, 아동이 없는 빈곤 여성 집단 내에서도 기혼무배우(약 101분), 기혼유배우(약 98분), 미혼무배우(약 97분)순으로 재량시간이 증가하였다.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여성 내 소득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재량시간 격차를 가장 많이완화시킨 집단으로는 자영업자, 유배우, 맞벌이가구, 중장년 집단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림 2)은 기본소득 지급 전·후 재량시간 규모변화를 성별과 특성과 관계없이 규모대로 나열한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급 후 모든 개인의 재량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재량시간이 남성의 재량시간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재량시간이 크게 증가한 집단은 소득빈곤층인 여성과 남성, 무배우자 여성과 남성인 집단이며, 이들은 기본소득 도입 전의 재량시간 순위보다 몇 단계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이 집단을 제외하고 기본소득 지급전과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 지급 후 커다란 순위 변동이나 구조적인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이 시사 하는 바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개인의 시간자율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기본소득만으로는 현재의 젠더불평등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V. 결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이 확연히 드러났다. 재량시간 실태분석 결과, 소득빈곤층 남성을 제외하고, 개인·가구·고용특성에 상관없이 여성의 재량시간이 남성의 재량시간보다 낮았으며, 그 차이도 컸다. 산출한 재량시간은 세후, 공적이전급여가 지급된 후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으로, 다시 말해 조세효과가 반영되었고, 사회보험(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급여 및 고용보험)과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 EITC, 기초노령연금, 양육수당 등이 지급된 상태에서의 재량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의 재량시간이 남성의 재량시간보다 낮다는 사실은, 현재의 공적이전제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과노동시장정책이 모두 반영된 뒤에도 여성과 남성의 재량시간 격차가 매우 큼을 의미하며, 총체적으로 경제·사회정책이 가구 내 성별분업을 묵과함으로써 젠더불평등을 시정하는데 역할을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모든 개인의 시간자율성을 증가시켰으며, 남녀 구분 없이 소득빈곤층의 재량시간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물론 어떠한 조세체계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 라 재량시간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누진세를 적용하거나 재분배규모가 커진다면 재 량시간 증가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재분배규모가 작거나 역진적 조세체계를 통한 기본 소득 지급은 재량시간 증가효과를 반감시킬 수 도 있다. 조세체계에 따라 재량시간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개인의 재량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소득비빈 곤층보다 소득빈곤층의 시간자율성을 큰 폭으로 높였는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취업자임을 고려할 때, 해당 소득빈곤층은 근로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대다수가 소득과 빈곤의 상충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이중빈곤'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하면(김교성·노혜진, 2010), 기본소득이 남녀 근로빈곤층의 재량시간을 가장 많이 증가시켰다는 본 연구결과는, 기 본소득이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의 시간자율성을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빈곤층의 경우 필수유급노동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길고, 그 중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필수무급노동시간도 길어 빈곤층 내에서도 빈곤여성이 빈곤남성보다 시간자율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가구단위 소득보장제도가, 특히 가구 내 성별분업으로 인해 무급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여성 의 시간자율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은 남성보다 특히 여성의 시간자율성을 크게 늘렸다. 여성 내에서도 교육수준이 낮거나,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에서 그 증가량은 많았다. 이는 기본소득이 인적자본이 적고 시간당 임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필수유급노동시간을 줄여줌으로써 개인의 시간자율성을 증대시킨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먼저, 재량시간의 증대는 필수유급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급노동시간을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왜 남성보다 여성의 재량시간을 더욱 증가시킨 것일까? 이것은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와 이에 따른 노동법에서의 제도적 보호 배제, 낮은 수준의 임금 및 일자리의 질, 고용지위와 연계된 사회보장체계로 인한 이중차별로 요약할 수 있다. 26) 한국의 여성은 가부장적 성별분업 관

^{26) &#}x27;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는 현재의 여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남성의 63.9%,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38.8% (남성 61.2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2.7% (남성 74.1%), 여성 고용률 50.8% (남성 71.2%),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 20.0%, 2016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여성비율 43.6%로 나타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념과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전략이 작동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여성은 불안정 노동자로 전략하였다. 이러한 고용상태는 다시 성별분업 관념을 강화하며 젠더불평등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은 임금노동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이에 속하지 않은 대다수의 불안정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이중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윤자영, 2018).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고용에 연계되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로서 '불안정노동과 젠더불평등의 관계'를 균열시키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은 시간빈곤에 처한 대다수의 여성들의 시간자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무급노동에 대한 부담을 덜거나 혹은 유급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자유를 증대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다. 여성 중에서도 돌봄 책임이 높은 중장년층의 유배우 가구의 여성의 경우, '돌봄의 성별화'로 인해 유급노동 뿐 아니라 무급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시간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기본소득 지급은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을 경험하는 남녀집단 뿐만 아니라, 대 다수의 시간빈곤을 경험하는 소득비빈곤 여성의 시간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만으로는 현재의 구조화된 젠더불평등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었다. 기본소득 지급 전·후 남녀 재량시간 규모변화를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을 지급 후 여성의 재 량시간 증가량이 남성의 재량시간 증가량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집단을 제외하고는 남녀간 커다란 순위변동이나 구조적 전복과 같은 현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이 개인의 시간자율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 자체만 으로는 현재의 젠더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젠더평등에 어떠한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으며, 어떠한 측면이 부족한 것인가? 본 연구를 통 해 기본소득은 남성보다 여성의 시간자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재량시간 격차 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여성 내에서도 소득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재량시간 격차를 줄 이는 데 긍정적임을 밝혔다. 특히 기본소득은 임금노동을 넘어서 모든 활동에 대한 '보편적 지지'라는 의미에서, 노동시장 이중화와 가구내 성별분업의 덫에 빠진 여성들의 무급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시간자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유급노동시간의 평등과 무급노동시간의 평등을 수반하지 않고는 기본소득이 제더평등에 미치 는 영향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만일 누진세제방식으로 월 30만원보다 높은 수준의 기 본소득 급여를 지급한다면 젠더불평등을 보다 더 시정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소득 만으로 젠 더불평등을 시정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다른 제도적 상보성 측면에서도 균형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시 개인의 시간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개혁과 유급/무급노동시간의 자율과 평등을 위한 정책적 발전의 필요로 귀결된다.

따라서 탈노동원리인 임금노동과 소득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단절하고, 가구 내 성별분업을 완화시키는 기제로서 기본소득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의 젠더평등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야 한다. 먼저 생산영역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 임금격차 축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나누기, 고용지위의 평등, 가부장적 성별분업 관념의 해체를 위한 노력과 같은 노동시장의 일차적 평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재생산영역에서는 상황이보다 복잡한데, 가구 내 여성이 담당했던 돌봄 노동이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통해 공공의이름을 빌린 시장영역에서의 '돌봄 노동의 성별화'로 이어져, 다시 불안정노동의 여성화를 강

²⁰¹⁸년 7월 4일 방문). 또한 백승호·안주영·이승윤(2017) 연구에서는 불안정 노동을 고용불안과 임금 (소득) 불안으로 정의 내렸는데, 고용과 임금이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의 여성의 비중이 남성 대비약 2.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밝혔다.

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자영, 2016).²⁷⁾ 가구 내에서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의 평등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위에 수립될 수 있다. 남녀 모두 보편적 돌봄자로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지원정책 (휴가정책), 소득지원정책(아동수당 및 양육지원), 서비스지원 정책(보육, 교육, 의료 등)등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사회적 위험은 국면적이라기 보다 젠더불평등 구조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가 맞물려 작동하고 있어 총체적인 특성을 뛰다. 구사회적 위험이 남성생계부양자의 소득상실을 야기하는 어떤 사건, 즉 노령, 질병, 실업이라고 한다면, 신사회적 위험은 탈산업화에 따른 노 동시장의 변화에서 야기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주로 가족(여성)이 담당했 던 재생산 기능을 더 이상 가족 내에서 담당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 발생했다. 특히 여성은 구 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이 중첩하여 발생하는 집단으로서, 소득상실 위험 뿐 아니라 '일 -생활 불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된다(최영준, 2011). 즉, 현재 한국사 회는 생산노동이 재생산 노동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다. 이에 대해 지난 20년간 사회보험을 확대시켜 왔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지위와 기여기반 급 여 설계로 노동시장 이중화에 따른 불안정 노동자들을 배제 시켜 왔으며, 매우 제한된 소득빈 곤층에 대해 낮은 수준의 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해 왔다. 또한 최근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보육서 비스 정책 등 사회서비스 정책을 발전시켜 왔지만, 국가책임 최소화 원칙과 이용자 부담방식 과 같은 시장화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사회권보다는 사회투자 혹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 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에 따라 돌봄 노동 종사자의 여성화와 저임금화 등 의 문제들을 심화시켜왔다. 또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지향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시 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저출산'이라는 기제 아래 놓여 있어 여전히 동등 돌봄제공자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송다영, 2017: 207).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소득과 임금노동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기제로서 탈노동원리를 실현하며, '사회적 재생산 위기'라는 총체적 위험 앞에 남녀의 시간자율성의 격차를 줄이며 여 성의 시간자율성을 증진하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사회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책임이 부과된 여성의 시간사용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개인이 어떠한 삶을 선택할 지에 대한 시간사용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재량시간 개념은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통해 대변되는 생산영역과 재생산영 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기본소득이 임금노동 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활세계에 대한 권리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조건들을 수 반해야 한다. 여성의 시간자율성의 증가는 임금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의 축소/균형/분담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시성의 비동시성'의 노력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노동 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편적 돌봄노동자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주춧돌로서 기능할 수 있 다.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관계설정은 기본소득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기본소득은 소득평등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 평등을 통해 젠더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수 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한국사회가 어떠한 사회적 시간체제를 지 향하는지에 따라 그 역할과 효과를 달리 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더 발전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27) &}quot;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이며,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 노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윤자영, 2017: 45)을 인지하고 이를 모두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토대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VI.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 강남훈. (2013). 생태기본소득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이론, 제43호, 239-265.
- _____. (2017).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구별 소득재분배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0.
- 강희경. (2007).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족과 문화, 19, 1-27.
- 김교성. (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33-57.
- 김교성, 노혜진. (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7.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8). 기본소득이 온다. 갈무리.
- 김교성, 이지은. (2017).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탐색. 비판사회정책, 제56호, 7-57.
- 김수정,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 김영순. (2017).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월간 복지동향, 제221호, 5-13.
- 노혜진. (2012). 한국사회 빈곤의 여성화: 개념의 확장과 재구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3). 재량시간을 중심으로 본 빈곤여성의 삶의 질. 사회복지연구, 44(1), 61-87.
- _____. (2017).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월간 복지동향, 제225호, 5-13.
- 박건. (2016). 기혼여성의 재량시간 활용과 시간관리 실태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138.
- 박이은실. (2013).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 백승호. (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185-212.
- 백승호, 안주영, 이승윤. (2017).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시장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4(2), 1-29.
- 변양규. (2017).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 및 소요예산 추정. KERIS Economic Quarterly, 17(5), 한국경제연구원, 1-16.
- 손문금. (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페미니즘 연구, (5), 239-287
- 송다영. (2016). 젠더관점에서 본 사회복지정책, 2016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83-216.
- 윤자영. (2016). 돌봄노동과 기본소득 모형. 여성학 논집, 33(2), 3-29.
- . (2017). 돌봄노동의 분배 정의를 위한 기본소득. 젠더리뷰, 44-51.
- _. (2018).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월간 복지동향, (233), 13-19.
- 윤홍식. (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비판사회정책, 제54호, 81-119.
- 윤홍식, 송다영, 김인숙. (2010).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서울: 공동체.
- 이병희, 홍민기, 이현주, 강신욱, 장지연. (2014).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현주, 장지연, 전병유. (2017). 현금 기본소득과 현물 공적서비스의 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56(1), 93-118.
- 장미혜. (2005). 가족: 계급과 성별 불평등의 또 다른 영역. 한국여성학, 21(2), 105-146.

- 전강수, 강남훈. (2017).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역사비평, 250-281.
- 조남경. (2017). 기본소득 전략의 빈곤 비판: 호혜성, 노동윤리, 그리고 통제와 권리. 사회보장연구, 33(3), 253-269.
- 조미라. (2017).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본 한국 가구의 노동시간 유형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은선. (2013). 한국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모색: 현행의 복지국가 프로그램과 한시적 시민수당의 결합에 대한 시론. 비판사회정책, 제38호, 83-126.
- _____. (2014). 노동인가, 돌봄인가, 여가인가?: 전일제 임노동자 맞벌이 부모의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영향과 학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45(3), 5-34.
- 주은선, 김영미. (2012). 사회적 시간체제의 재구축. 비판사회정책, 제34호, 237-289.
- 최영준. (2011).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부학연구, 17(2), 31-58.
- 최태훈, 염명배. (2017). 기본소득제가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최저소득보장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9(4), 95-120.
-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해외문헌 >

- Alstott, A. L. (2005). No Exit: What Parents Owe Their Children and What Society Owes Parents. Oxford University Press.
- Antonopoulos, R., & Hirway, I. (2010). Unpaid Work and the Economy. UK: Palgrave Macmillan, 1-21.
- Baker, J. (2008). All Things Considered, Should Feminists Embrace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3(3), 1-8.
- Bambrick, L. (2006). Wollstonecraft's Dilemma: Is a Citizen's Income the Answer?. Citizen's Income Newsletter 2, 3-10.
- Bardasi, E., & Wodon, Q. (2010). Working Long Hours and Having No Choice: Time Poverty in Guinea. Feminist Economics, 16(3), 45-78.
- Berardi, F. (1980). Anatomy of Autonomy. Translated by Jared Becker, Richard Reid, and Andrew Rosenbaum. Semiotext(e) 3(3): 148-171.
-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and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Birnbaum, S. (2012). Basic Income Reconsidered: Social Justice, Liberalism, and the Demands of Equali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Burchardt, T. (2008). Time and Income Poverty.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 Cox, N., & Federici, S. (1976). Counter-Planning from the Kitchen: Wages for Housework, a Perspective on Capital and the Left. New York Wages for Housework Committee.
- Dalla Costa, M., & James, S. (1973). The Power of Women and the Subversion of

- the Community. Bristol: Falling Wall Press.
- Daly, M. (1992). Europe's Poor Women? Gender in Research on Povert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8(1), 1-12.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_.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Palgrave Macmillan.
- ______. (2003). After the New Social Democracy: Social Welfare for the 21st Centur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______. (2004). Social Policy and Time. Time & Society, 13(2-3), 197-219.
- ______. (2011b). "Challenges for Social Policy". T. Fitzpatrick(ed.).
 -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 and Social Policy. Bristol, UK: Policy Press.
- Fraser, N. (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 임옥희 역. (2017). 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157-192.
- Gershuny, J. (2003).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Gheaus, A. (2008). Basic Income, Gender Justice and the Costs of Gender-symmetrical Lifestyles. Basic Income Studies, 3(3).
- Goodin, R. E. (1999). The Real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Work and Welfare: Towards a Post-Productivist Welfare Regim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1), 13-39.
- _____ (2010). Temporal Justice. Journal of Social Policy, 39(1), 1-16.
- Goodin, R. E., Parpo, A., & Kangas, O. (2004). The Temporal Welfare State: the Case of Finland. Journal of Social Policy, 33(4), 531-552.
- Goodin, R. E., Rice, J. M., Bittman, M., & Saunders, P. (2005). The Time-Pressure Illusion: Discretionary Time vs. Free Tim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3(1), 43-70.
- Goodin, R. E., Rice, J. M., Parpo, A., & Eriksson, L. (2008). Discretionary time: A New Measure of Free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rz, A. (1989). Critique of Economic Reason (Vol. 42). London: Verso.
- _____ (1999). Reclaiming Work: Beyond the Wage-Based Society. Polity: Cambridge.
- Jacobs, J. A. and Gerson, K. (2004). The Time Div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alenkoski, C. M., & Hamrick, K. S. (2014). Time Poverty Thresholds in the USA. In Encyclopedia of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Research. Springer Netherlands. 6650-6653.

- Korpi, W. (2000). Faces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ttern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7(2), 127-191.
- Leisering, L., & Leibfried, S. (2001). Time and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s: United Germany in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M. (2013). Cost, Compensation, Freedom, and the Basic Income Guaranteed Jobs Debate, Basic Income Studies, 7(2), 41-51.
- Lister, R. (2000). Dilemmas in Engendering Citizenship. Hobson, B (eds.).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New York: Routledge.
- Little, A. (1998). Post-Industrial Socialism. London: Routledge.
- McLean, C. (2015). Beyond Care: Expanding the Feminist Debate on Universal Basic Income. WiSE Research Centre, Glasgow School for Business and Society, Glasgow Caledonian University.
- McKay, A. (2001). Rethinking Work and Income Maintenance Policy: Promoting Gender Equality Through a Citizens' Basic Income. Feminist Economics, 7(1), 97–118.
- _____ (2005). The Future of Social Security Policy: Women, Work and a Citizens Basic Income. Routledge.
- Millar, J. (2003). Gender,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Social Policy and Society, 2(3), 181-188.
- O'Connor, J. S., Orloff, A. S., & Shaver, S. (1999).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ffe, C. (1972). Advanced Capitalism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s & Society, 2(4), 479-488.
- . (1984).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London: Hutchinson.
- Orloff, A. S.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3-328.
- Parijs, P. V. (1997).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UP Catalogue.
- Parijs, P. V., Jacquet, L., & Salinas, C. (2000). Basic Income and its Cognates. Basic Income on the Agenda. Policies and Politics, 53-84.
- Pateman, C. (2003). Freedom and Democratization: Why Basic Income is to Be Preferred to Basic Capital, Palgrave Macmillan UK, 130-148.
- _____. (2004). Democratizing Citizenship: Some Advantages of a Basic Income. Politics & society, 32(1), 89-105.
- Polanyi, K. (1944). Great T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Boston. 홍기빈 역. (2009). 칼 폴라니,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 착한책가게.
- Rapoport, R., & Rapoport, R. N. (1977). Dual-Career Families Re-Examined: New

- Integrations of Work & Family (Vol. 521). Harper & Row.
- Rice, J. M., Goodin, R. E., & Parpo, A. (2006). The Temporal Welfare State: A Cross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Public Policy, 26(3), 195-228.
- Robeyns, I. (2001). Will a Basic Income Do Justice to Women?". Analyse & kritik, 23(1), 88-105.
- Sainsbury, D. (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Standing, G. (2009). Work and Occupation in a Tertiary Society. Labour & Industry: a Journal of the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 of Work, 19(3), 49-72.
- ______. (2013). Why a Basic Income Is Necessary for a Right to Work, Basic Income Studies, 7(2): 19-40.
- Wajcman, J. (1998). Managing Like a Man: Women and Men in Corporate Management, Cambridge, MA: Polity Press.
- Weeks, K. (2011). The Problem with Work: Feminism, Marxism, Antiwork Politics, and Postwork Imaginaries, Duke University Press, 제현주 역. (2016).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반노동의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 갈무리.
- Zelleke, A. (2008). Institutionalizing the Universal Caretaker through a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3(3), 1-9.
- ______. (2011). Feminist Political Theory and the Argument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Policy & Politics, 39(1), 27-42.

<기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Basic Income Earth Network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org/)

Basic Income Korean Network 홈페이지 (http://basicincomekorea.org/)

Ⅷ. 부록

[1] 성별 재량시간 분포와 변화

단위 : 일평균(분)

				기보~	소득 지급	전		지급	후	. 200(6.
				7,12	<u>- ' ' ' '</u> 필수시간		-3) =}-	필수시간		ਟ ਹੀ ਸ
			N	유급	무급	개인	재량 시간	유급노동	재량 시간	증가분
				노동	노동	돌봄				
	전체	남	2,784	250.26	1.46	480.0	708.28	202.46	756.09	47.80
	- "	여	1,741	314.59	81.55	480.0	563.86	242.81	635.64	71.78
	고졸이하	남	1,422	285.97	0.79	480.0	673.24	229.71	729.50	56.26
		여	986	375.09	89.93	480.0	494.99	288.93	581.14	86.15
개	초대졸이	남	1,362	212.99	2.15	480.0	744.87	174.01	783.85	38.98
인 -	상	여	755	235.58	70.61	480.0	653.80	182.57	706.82	53.01
특	 청년	남	541	218.32	2.12	480.0	739.56	168.19	789.69	50.13
성		여	400	249.45	34.84	480.0	675.71	181.61	740.54	64.83
	중장년	남	2,243	257.97	1.30	480.0	700.74	210.72	747.98	47.24
		여	1,341	334.02	95.49	480.0	530.50	260.17	604.35	73.85
	무배우	남	623	239.29	0.36	480.0	720.35	178.54	781.10	60.75
		여	541	294.78	43.29	480.0	621.93	220.88	695.83	73.91
	유배우	남	2,161	253.43	1.77	480.0	704.80	209.35	748.88	44.07
		여	1,200	323.52	98.80	480.0	537.68	252.69	608.51	70.82
	아동유	남	548	282.29	6.64	480.0	671.08	244.10	709.26	38.19
		여	212	319.81	58.33	480.0	581.86	260.11	641.56	59.70
가	아동부	남	2,236	242.41	0.19	480.0	717.40	192.25	767.56	50.16
구			1,529	313.86	84.77	480.0	561.36	240.41	634.82	73.46
특	맞벌이가	남	1,214	204.35	1.02	480.0	754.63	155.20	803.78	49.15
성	구	여	1,033	280.41	90.42	480.0	589.17	208.09	661.49	72.33
	홑벌이가	남	1,570	285.76	1.79	480.0	672.44	239.0	719.21	46.76
	구	여	708	364.45	68.61	480.0	526.94	293.46	597.93	70.99
	소득빈곤	남	284	464.94	1.49	480.0	493.57	384.05	574.46	80.89
		여	214	471.84	80.39	480.0	407.77	373.96	505.65	97.88
	소득비빈	남	2,500	225.88	1.45	480.0	732.67	181.83	776.72	44.05
	곤	여	1,527	292.55	81.71	480.0	585.74	224.43	653.86	68.12
	 상용직	남	1,677	213.83	1.98	480.0	744.19	173.87	784.15	39.96
	0 0 1	여	990	274.26	76.84	480.0	608.90	212.86	670.30	61.4
卫	임시직 임시직	남	205	321.87	0.53	480.0	637.59	248.57	710.90	73.31
융	1 1 1 1	여	340	373.97	83.81	480.0	502.22	285.78	590.41	88.19
특	6) 6 7)	남	196	289.0	0.40	480.0	670.60	227.93	731.67	61.07
성	일용직	여	110	434.82	88.99	480.0	436.18	336.06	534.94	98.76
	-1 41 41 -1	남	706	305.25	0.77	480.0	653.97	249.91	709.31	55.34
	자영업자	o⊒	301	336.21	91.77	480.0	532.01	258.69	609.54	77.53
	I		- /-			0.0				

[2] 여성 내 계급간 재량시간 분포와 변화

단위 : 일평균(분)

	기본				소득 지급 전			지급 후		
		N		필수시간			재량	필수시간	재량	증가분
				유급 노동	무급 노동	개인 돌봄	시간	유급노동	시간	0/1正
 전체		빈곤	214	471.84	80.39	480.0	407.77	373.96	505.65	97.88
		비빈곤	1,527	292.55	81.71	480.0	585.74	224.43	653.86	68.12
개 인 특 성	고졸	빈곤	177	487.46	85.77	480.0	386.77	385.88	488.35	101.58
	이하	비빈곤	809	350.50	90.84	480.0	518.66	267.72	601.44	82.78
	초대졸이	빈곤	37	397.12	54.68	480.0	508.20	316.92	588.40	80.20
	상	비빈곤	718	227.26	71.44	480.0	661.31	175.64	712.92	51.61
	청년	빈곤	27	360.21	30.99	480.0	568.79	264.54	664.47	95.67
		비빈곤	373	241.43	35.12	480.0	683.45	178.83	746.05	62.60
	중장년	빈곤	187	487.96	87.53	480.0	384.52	389.75	482.72	98.20
		비빈곤	1,154	309.07	96.77	480.0	554.15	239.17	624.06	69.91
가 구 특 성	무배우	빈곤	104	429.79	61.91	480.0	468.30	329.74	568.35	100.05
		비빈곤	437	262.66	38.86	480.0	658.49	194.97	726.17	67.69
	유배우	빈곤	110	511.60	97.87	480.0	350.53	415.76	446.37	95.84
		비빈곤	1,090	304.54	98.89	480.0	556.57	236.24	624.87	68.30
	아동무	빈곤	205	471.97	81.87	480.0	406.16	372.78	505.35	99.19
		비빈곤	1,324	289.38	85.22	480.0	585.40	219.91	654.87	69.47
	아동유	빈곤	9	468.87	46.68	480.0	444.45	400.72	512.60	68.15
		비빈곤	203	313.20	58.84	480.0	587.95	253.88	647.28	59.32
	맞벌이	빈곤	47	412.39	105.14	480.0	442.47	305.55	549.31	106.84
		비빈곤	986	274.12	89.72	480.0	596.16	203.44	666.84	70.68
	홑벌이	빈곤	167	488.57	73.43	480.0	398.0	393.21	493.36	95.36
		비빈곤	541	326.13	67.12	480.0	566.74	262.67	630.20	63.46
고 용 특 성	상용직	빈곤	82	447.70	79.27	480.0	433.03	365.34	515.39	82.37
		비빈곤	908	258.60	76.62	480.0	624.78	199.09	684.29	59.51
	임시직	빈곤	66	488.44	81.05	480.0	390.51	380.44	498.51	107.99
		비빈곤	274	346.40	84.48	480.0	529.12	262.98	612.54	83.42
	일용직	빈곤	41	450.92	85.22	480.0	423.86	351.15	523.63	99.77
		비빈곤	69	425.26	91.24	480.0	443.51	327.10	541.67	98.16
	자영업자	빈곤	25	541.51	74.42	480.0	344.06	422.51	463.06	119.0
		비빈곤	276	317.62	93.34	480.0	549.04	243.85	622.81	73.77